

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 (제31조제2항관련)

1.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(보건·의료기술·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)의 직급별 가산비율

구분	6·7급		8·9급	
가산대상 자격증	변호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변리 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, 관세사, 사회복지사 1급, 공인노무사, 직업 상담사 1급, 사 회조사분석사 1 급, 임상심리사 1급, 임상심리사 2급	물류관리사, 철도 교통안전관리자, 사회복지사 2급, 직업상담사 2급, 사회조사분석사 2급	변호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변리 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, 관세사, 사회복지사 1급, 공인노무사, 직업 상담사 1급, 사 회조사분석사 1 급, 임상심리사 1급, 물류관리사, 철도교통안전관 리, 사회복지사 2급, 직업상담사 2급, 사회조사분 석사 2급, 임상 심리사 2급	사회복지사 3급
가산비율	5%	3%	5%	3%

비고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·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. 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.

2. 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

구분	6·7급		8·9급	
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	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	기능사
가산비율	5%	3%	5%	3%

비고: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.